

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14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8월 29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개정에 따라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고, 조례로 위임된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시장의 책무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·운영·구성(안 제3조 및 제4조)
- 다. 단장의 임무, 실무팀의 편성(안 제5조 및 제6조)
- 라. 지원단 재난현장 설치(안 제7조)
- 마. 재난상황 공유·보고, 활동 평가 기록에 관한 사항(안 제8조 및 제9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- 다. 기타
 - (1) 입법예고(2022. 6. 30. ~ 7. 11.) 결과: 의견없음
 - (2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별첨

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책무) 서울특별시장은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,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3조(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·운영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재난안전대책본부”라 한다)의 본부장(이하 “재난안전대책본부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(이하 “지원단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한다.

제4조(구성) 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.

② 단장은 서울특별시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과 「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(이하 “자원봉사센터”라 한다)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.

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
1.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
2.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의 직원
3. 「재해구호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
4. 그 밖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및 법인,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직원

제5조(단장 임무) 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단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」 제15조제4항제6호에 따라 조정·지원할 수 있다.

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실무팀의 편성)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.

1. 상황총괄팀
2. 대외협력팀
3. 현장파견팀
4. 자원지원팀
5.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

② 실무팀의 조직과 임무는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단 재난현장 설치)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
1.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
2. 「재해구호법」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
3. 자원봉사자의 규모
4.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및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
5.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

제8조(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) ①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.

②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「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」 제16조제2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.

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제9조(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)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시군구 지원단 인력·자원 지원 현황, 시군구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및 자원봉사활동의 사진·영상,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

4. 작성자

- 행정국 자치행정과 이현음(2133-5824)